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옥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85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김영옥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영철,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박성연,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경제활동 지원, 권익 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 관련 시설 및 공간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일자리 연계,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여성관련 단체 및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수의의 방식으로 사용 허가가 가능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바, 이에 여성 관련 단체 및 시설이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의 방식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상 명확한 규정을 신설,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 여성 관련 시설 운영 주체에 대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 권익 신장, 성평등 실현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짐. 이는 여성정책의 지속 가능성, 실효성, 행정적 연속성 확보에 기여하고, 향후 서울시 양성평등 정책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 가. 여성관련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또는 여성관련시설 내 공간을 사용하려는 자로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 나. 여성관련시설의 사용허가를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자”를 “자 또는 여성관련시설 내 공간을 사용하려는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정하는 경우 제13조의 여성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이 설치한 여성관련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u><신 설></u>	제14조(사용허가 등) ① ----- ----- ----- <u>자 또는</u> <u>여성관련시설 내 공간을 사용하</u> <u>려는자</u>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 가를 정하는 경우 제13조의 여 성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14조(사용허가 등)의 사용허가 대상자를 확대(여성관련시설 내 공간을 사용하려는자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사용허가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서울시 재정투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